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국민의당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석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현 조례는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법률로 하고 있으나 이 법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률 및 시행령을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.
- 현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(1)부시장이 이사장을 맡도록 하고 있으나, 타 조례와의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장이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첫째, 제1조 근거 법령을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.

둘째, 제7조 서울시장이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. 현재 서울시의 출자·출연기관 중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